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5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백종헌

강대식 · 최보윤 · 김승수

김소희 • 고동진 • 이달희

송언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% 이내로 정하면서,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,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.

이러한 규정은 1950년 「은행법」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,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 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.

그러나 지방채,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, 「은행업감독규정」(금융위원회 고시)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

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.

이에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 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1호가목). 법률 제 호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에 1)부터 5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.

- 1) 「국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
- 2)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
- 3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증권
- 4)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에 따른 지방채
- 5) 「한국은행법」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금지업무) 은행은 다음 각	제38조(금지업무)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	
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
1.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	1
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	
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	
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	
초과하는 투자. 이 경우 금융	
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	
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	
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	
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	
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	가
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	
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	
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	
는 것. <u>다만, 국채 및 한국</u>	<u>다만, 다음의 어느</u>
은행 통화안정증권, 「금융	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
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	제외한다.
법률」 제11조제6항제2호	
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.	
<u><신 설></u>	1) 「국채법」 제2조제1호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나. ~ 라. (생 략) 2. ~ 6. (생 략) 에 따른 국채

2)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

3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 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 로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 기관 및 그 밖의 특수공공 법인이 발행한 증권

4)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에 따른 지방채

5)「한국은행법」제69조에 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 2. ~ 6. (현행과 같음)